

# 안산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5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9. 4. 8.  
발 의 자 : 김명환 의원  
외 8인

## 1. 제 안 이유

- 조문중 기관 명칭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조문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코자함.

## 2. 주 요 골자

- 기관 표현 명칭중 “경기도 안산시의회”를 “안산시의회”로 개정(안 제1조)

## 안산시의회에출석 · 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의회에출석 ·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다음과  
같이개정한다.

제1조 (목적) 중 “경기도 안산시의회”를 “안산시의회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안산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..... ..... <u>안산시의회</u>..... ..... .....</p>

제1편 의회 안산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

안산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  
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

( 안산시조례 제399호 )  
1991. 4. 4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7조의 규정에  
의하여 경기도 안산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 
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 
다음과 같다.

1. 부 시 장
2.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·국장, 담당관, 과장급
3.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
4.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시 본청의 담당관·과장급과 동일직급  
이상인 자

부 칙

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.